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5.5.27.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5월 말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4년 5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 후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들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함으로써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 3,000m² 이상인 교육시설과 업무시설에 대해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한 차양 등 일사조절 장치와 단열재 및 방습층, 지능형계량기(BEMS*)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냉방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첨부해야 했던 에너지평가서의 첨부 의무를 폐지하며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 등에 공개(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위한 공공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공개)한다는 것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문화·집회시설, 병원, 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구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건축물 대장 등에 표기한다. 또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의 시행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은 물론 건물에너지 정보 공개 확대 및 관련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이 가능해져 녹색건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 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하여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

** 현재 녹색건축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공개 중이며 연내 네이버, 부동산114 등 일반 부동산 포털까지 확대 예정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0m² 이상이고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병원, 학교·도서관 등

****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3,000m² 이상이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500m²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 제외) 건축물

지역공동체 거점 개발을 위한 마을공방 육성 사업 추진

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2015.4.28.

전국에 있는 폐광촌 지역 폐교 건물이 지역공동체 거점으로 거듭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서울 성동구·중랑구, 부산 해운대구·사하구, 경기 평택시, 강원 태백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경북 상주시·문경시 총 11곳을 마을공방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 특성과 사업규모 등에 따라 적게는 1,5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6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국비 9억 원과 지방비 9억 원 등 총 사업비는 18억 원). 지방비는 지역별 시설물 규모와 유형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지원범위는 마을공방 건축(신축·리모델링)에 필요한 설계비, 건축공사비(부지 매입비 제외)로 한정된다. 마을공방 육성 사업은 양극화·고령화·인구과소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커뮤니티가 지자체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 기업과 학교가 기술지도·상품개발 등을 지원, 주민이 시설을 운영하고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시범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 공동작업장(마을공방)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지역단위의 인프라를 조성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기업이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마을공방 사업장별로 프로젝트 매니저(PM)를 지정하여 공간설계, 마을공방 관리·운영 등 사업단계별 자문을 지원하고, 주민대표와 관계공무원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마을공방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러한 마을공방, 마을카페, 작업장 휴식공간들은 주민들이 함께 일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새로운 지역공동체 플랫폼의 역할을 하여, 마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공동체에 활력을 주는 공간이 될 것이다.

도시 생태휴식공간 조성 및 기준 개선

환경부 자연정책과
2015.3.24.

서울특별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2015.5.10.

광주광역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2015.5.1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2015.5.11.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생태휴식공간 '자연마당' 조성 확대를 위해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중동, 밀양시 내일동 등 4곳을 '2015년도 자연마당 조성지'로 선정하였다. 자연마당은 전국 8개 지역에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 4곳이 추가됨에 따라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에서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개울·초지·숲 등 다양한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생물을 다양하게 증가시키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자연마당에 대한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까지 3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간으로 복원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환경부의 2014 자연마당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부대전청사의 전면광장 5만 6,860m²를 2016년까지 국비 등 4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양한 생물서식처로 조성할 계획이다. 1992년에 건립된 정부대전청사는 당시 시민들의 만남·휴식 등의 활동공간으로 조성되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포장된 넓은 공간은 여름철 복사열로 인한 도심 열섬화 현상을 일으키고, 호우 시 도시 침수피해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여름철 포장면의 눈부심, 그늘과 쉼 공간의 부족은 인근 주민들과 건물 종사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대전시는 이번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샘머리 공원의 생태습지형 저류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에 생태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구 풍암저수지 내 불법 점유지를 멸종위기종 서식과 생태학습이 가능한 생태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환경부가 공모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에 선정되어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 광주시는 총 4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양서류 서식지, 수질정화 습지, 야생화 초지, 생태체험학습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은 생물종을 다양화하면서 인근 주민의 학습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서울시가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사업 등 개발 시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 비율을 수치화한 것으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특수성 보도블록' 등이 이에 해당된다.

생태면적률 확보는 서울처럼 과밀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시에서는 토양의 자연순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부 밀도 있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에서는 단순 규제로 인식되어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생태면적률 확보가 용이하도록 체적 개념의 녹지용적률을 도입, 공간유형별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도시계획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 제시와 함께 사업 유형 및 용도지역·건축유형별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걷기 편한 거리 만들기,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권 개선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2015.4.24.

부산광역시 부산개발국 도로계획과
2015.4.8.

서울시는 지난 2012년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의 3년 성과를 바탕으로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시즌2'를 발표하였다. 시는 보도블록 10계명을 통해 그동안의 보도(歩道)공사 60년 관행을 개선하고, '보도 위 주인은 사람'이라는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낸 데 이어 시즌2에서는 보다 섬세하게 교통약자 눈높이를 맞추고, 보도공사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미관개선 까지 고려할 계획이다.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시즌2에는 ▲교통약자 보행권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턱 낮추기($20\text{cm} \rightarrow 1\text{cm}$)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콘크리트 계열로 정비 ▲보도블록 공사는 보도포장 전문기술 교육을 이수한 기능공 공사 참여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다.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보도 공사의 경우에도 건축허가 시 기준을 제시해 이행하도록 하고, 「가로 설계 및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가로수·환기구·분전함 등을 정돈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인 보도를 걷기 편한 보행자 중심의 보도로 조성·관리하는 현장중심의 행정실현을 위해 '보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4월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도관리의 기본틀을 세울 계획이다.

우선 보도폭 불일치, 보도폭 협소, 보도 미설치, 노후 보도교체 구간, 무질서한 점용시설로 인한 보행 불편구간 및 보행밀집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중점 정비구역을 설정한다. 이어 정비계획과 재정여건에 맞춰 연차적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보도정비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도공사 설계·시공·유지관리에 따른 매뉴얼 재정비와 보도이력제, 보도교체 기준 마련, 도로관리 심의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보도 공사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부산광역시 교통국 대중교통과
2015.4.2.

부산시는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사업을 완료해 지난 4월 개통식을 열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유럽·미주 등 자동차 교통이 발달한 세계 40여 개 도시에서 도입해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 도심 교통환경 개선 등에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이다. 국내에는 2009년 대구 중앙로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2014년 서울 연세로에 이어 동천로가 부산 최초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되었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NC백화점 서면점에서 더샵 센트럴스타 아파트에 이르는 740m 거리로, 오전과 오후 출·퇴근 시간에는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또 동천로 구간을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왕복 4차로가 2차로로 주는 대신 보도가 넓어지고 분수시설 등 각종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도심 속 문화거리로 거듭나게 된다. 또한 전선 지중화 공사로 인해 도시경관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내버스 노선을 확충해 대중교통으로 서면권 도심지로의 진입이 쉽도록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만 통행하도록 하여 승용차 밀집으로 인해 항시 발생했던 서면 일대의 교통 혼잡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전용지구가 계획대로 운영되면 도심지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고 도심지 승용차 이용이 줄면서 교통 소통이 원활해지고, 보행자가 많아지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어 시민들이 항상 찾고 싶은 거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 계획안



센트럴스타 맞은편



버스승객 대기시설



가로

자료: 부산시, '서면 동천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첫 삽 – 도심 교통난 해소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획기적 시도' 부산시 보도자료, 2013.7.10.

투명성 확보를 위한 건축행정 개선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2015.4.3.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2015.5.7.

대전시는 사업자(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던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건축심의 기준'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새롭게 마련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지난 2월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negative) 정책'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규제일변도의 기준들(공동주택의 길이는 4호 연립 또는 50m 이하, 각 면의 벽면율 40% 이상 확보, 지하주차장 설치 원칙, 3개 층 이내에서 총수계획 등)이 사라지게 되었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안)을 행정고시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인·허가 부문에서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준공) 단계에서 현장에 나가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무대행건축사제도'의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 시행한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준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이다.

9대 운영 개선책의 주요 내용은 ▲지정 절차 무작위 추첨 ▲모니터링 제도 시행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을 업무 지정 후 36시간 이내로 연장 ▲업무대행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시 ▲업무대행건축사 업무 매뉴얼 작성 ▲부적절 행위에 대한 협회의 징계조치 실시 ▲스마트폰 앱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기능 신설 등이다. 이 제도는 투명한 건축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